

충청북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
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1년 1월 11일
- 회부일자 : 2021년 1월 12일

3. 제안이유

-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을 강화하고,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- 지역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 및 타시도 유치경쟁의 우월적인 인센티브 지원 정책 추진

4. 주요내용

- 외국인투자유치 공공기관 및 민간전문기관에 공무원 파견(안 제4조)
- 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 사업 지원(안 제6조)
-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설치·운영(안 제7조)
-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(안 제9조)
- 도내 신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(안 제17조)
- 개발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시 조성개발비 및 기반시설 지원(안 제22조)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우경수)

가. 제출배경

- 외국인직접투자 주축인 美·中·日·유럽지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위축 심화
- 지난해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(FDI)는 신고기준으로 전년 대비 11.1% 감소한 207.5억불, 도착기준은 17% 감소한 110.9억불을 기록

【 2020년 외국인직접투자 (단위:억불, %) 】

구 분	신고 기준			도착 기준		
	'19년	'20년	증감	'19년	'20년	증감
상반기	98.7	76.6	△22.4	61.9	49.3	△20.3
하반기	134.6	130.9	△ 2.8	71.7	61.6	△14.1
합 계	233.3	207.5	△11.1	133.6	110.9	△17.0

※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자료

-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감소로 인해 광역자치단체간 기업유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파격적인 기업 인센티브 지원근거 마련 필요
- 현행 충청북도에 투자하려는 국내·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「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」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별도로 분리 제정

나. 주요 검토내용

1)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상위법령에 대한 저촉여부에 대하여

- 본 조례안은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(법률 제17653호)에 근거하여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의 인센티브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것으로서
- 코로나19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지역 간 투자유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기업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코로나19 이후의 투자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사료됨

- 상위법인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,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,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등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음

2)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4조, 제10조는 투자유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외국인 투자유치 전문기관에 파견하거나, 관련기관 단체의 전문가를 파견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
- 안 제6조, 제7조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운영하는 **외국인 투자기업협의회 사업에 필요한 경비**를 지원하고,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들의 고충 및 건의사항 처리를 위한 **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**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
- 안 제9조는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
- 안 제17조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중 사업장 신설 기업으로 국가 현금 지원 대상 제외기업에게 총 투자금액의 30% 범위 내에서 시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
- 안 제22조는 개발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시 조성개발비 및 기반시설을 지원하고, 대규모 관광서비스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
- 안 제25조, 제26조는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에 따라 도의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외국자본을 유치할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
- 안 제26조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금 지원 취소 및 반환 규정을 둠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코로나19 재 확산에 의한 경기침체 장기화, 미국 신정부 출범, 영국의 브렉시트(Brexit) 현실화 등 세계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가 위축되고 있어 향후 외국인 투자유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
- 외국인투자유치를 확대해 충북의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려면 외국인 투자자가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구비하고 행정지원서비스, 투자인센티브 등 사업 편의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함
- 본 제정안은 외국인투자유치 전문가 활용 및 지원조직 강화와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, 충북의 외국인 투자유치 환경개선과 역량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,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